

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

「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
「오산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6년 10월 02일

오산시의회의장

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박창선 의원 발의)

1. 제안이유

-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권익보호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
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명확히 하고, 처우개선 사업 및 위원회 운영을
정비하는 한편 관계 기관·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·시행하고, 권익보호 및 근무환경·안전 개선에
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(안 제6조)
- 처우개선 사업에 복리후생 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 포함(안 제8조)

- 위원회를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, 정기회를 연 1회 소집하도록 함
(안 제14조)
-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(안 제20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의견제출

- 제출기일 : 2026년 10월 8일까지
-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오산시의회 홈페이지 등
- 제출서식 : 조례(규칙)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
(오산시의회 홈페이지>알림마당>입법예고>공지)
-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연락처번호, 의견
- 제출기관 : 오산시의회(정책지원팀)
 - 우편번호 : 18132
 - 주 소 : 오산시 성호대로 141(오산동, 오산시의회)
 - 전 화 : 031)8036-8056
 - 전자메일 : csm0101@korea.kr

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”를 “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“처우개선 및 지위향상”을 “처우개선, 지위향상 및 권익보호”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근무환경 개선”을 “근무환경 및 안전 개선에 대한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제1호 중 “개선”을 “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권리옹호”를 “권익 보호를 위한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위원장이 필요하다고”를 “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,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”로 한다.

제20조를 제21조로 하고,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0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, 지위 향상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관계 기관 및 관련 법인·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조(종합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<u>처우개선</u> 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<u>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</u>	제6조(종합계획의 수립) ① ----- ----- ----- <u>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u>
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② ----- -----.
1.·2. (생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3. 사회복지사 등의 <u>처우개선</u> 및 <u>지위향상</u> 에 대한 계획	3. ----- <u>처우개선, 지위향상 및 권익보호</u> --
4. 사회복지사 등의 <u>근무환경</u> 개선 계획	4. ----- <u>근무환경 및 안전 개선에 대한</u> ----- --
5. (생략)	5. (현행과 같음)
제8조(처우개선 등 사업)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	제8조(처우개선 등 사업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<u>개선</u> 을 위한 사업	1. ----- <u>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</u> ----- -----
2. ~ 4. (생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
5.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<u>권리옹호</u> 사업	5. ----- <u>권익보호를 위한</u> -----
6.·7. (생략)	6.·7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④ (생 략) 제14조(위원회의 운영) ① (생 략) ② 위원회의 회의는 <u>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</u> 위원장이 소집한다. ③ ~ ⑤ (생 략) <u><신 설></u> <u>제20조</u>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 제14조(위원회의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,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---.</u> ③ ~ ⑤ (현행과 같음) <u>제20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사회 복지사 등의 처우개선, 지위 향상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관계 기관 및 관련 법인·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</u> <u>제21조</u> (현행 제20조와 같음)
--	---